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0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기금명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재 원	◦ 정부출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관 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법안”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²⁾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³⁾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2월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어 세계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정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 기금운영계획 심사 등의 외부적 통제를 통해 사업추진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등에 관한 고시」는 총 17개의 기술(반도체 분야 8개, 디스플레이 분야 4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바이오 분야 2개)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4)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⁵⁾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동 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은 기금의 용도 사업인 전략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5)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 국가 경제 성장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한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과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주도권 선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및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영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규모를 현재로서는 추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관련 지원 사업이 운영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 사례>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일반회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 초격차 유지 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45억원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 지원	154억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예비취업자, 재직자 등 대상 패키지 교육 실시	43억원
	배터리 아카데미 구축	예비취업자, 재직자 등 대상 교육 등 실시	37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금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9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과 일반회계 비교>

구분	기금	일반회계
설치목적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운영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 조정 • 국회심의 • 의결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심의 • 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u>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u>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수입과 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계획변경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추경예산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구성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신설에 대해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높지 않으며,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특히 민간출연금 및 기부금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규모와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기금재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유사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기금신설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 금법」</u>

문의처
02)6788-5152